

『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 조정(안 제2조)
 - 별표 2: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
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신설
- 근거법규 및 자구수정
 -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제명 수정
 -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정리 및 근거법규 제명 수정
- 위임사무 삭제
 - 관련사무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 - 적십자회비 부과·징수 사무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,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소액계약, 단기계약, 갱신계약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